

1.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당기순손실 과소 계상 등

2. 제재대상사실

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83조의3,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및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비율을 100분의 100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정상분류 대출금에 대하여만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등 회계 및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함에도

2007회계년도 결산시 ●●● 등 4명에 대한 대출금 2억 65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(추정손실 등 → 정상 등)하여 대손충당금을 1억 19백만원 과소적립하고, 고정이하 대출금 1억 73백만원에 대하여 미수이자 3백만원을 부당 계상함으로써 당기순손실을 1억 22백만원 과소 계상하였음[순자본비율을 0.68%p 과대산정(정당 $\Delta 7.23\%$ → 부당 $\Delta 6.55\%$)]

3. 제제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원	주의적경고 : 1명

< 관련법규 >

1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83조의3
2. 「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」 제20조의2
3.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11조, 제12조, 제15조의2
4. 「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8조, 제12조
5. 「회계업무방법서」 제3장 제11절